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현행 구조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1.10. ~ 2025.2.19.)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역학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 관련 부설 연구기관이나 산학협력단, 그 밖에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조사·판단할 수 있는 기관·법인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 각호의 사람이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한 후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2)가)의 80dB 이상(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의 정상란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가) 50dB 이상(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움)의 50dB 이상란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2호가목2)나)의 40dB 이상의 40dB 이상란 중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제4호가목5)의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나목8)의 “제12호”를 “제15호”로 하며, 제6호다목7)의 “제12호”를 “제15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 신 설 > |   | 제13조(역학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 관련 부설 연구기관이나 산학협력단, 그 밖에 공무원 질병의 발생 원인을 조사·판단할 수 있는 기관·법인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
| < 신 설 > |   | ② 공단은 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   |   |
|         |   |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원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   |
|         |   | 2.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신 설 > |   | ③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1항                                                                                                                                               |   |   |

|                                        |                                                                                                                                   |
|----------------------------------------|-----------------------------------------------------------------------------------------------------------------------------------|
| <p><u>제13조</u> · <u>제14조</u> (생 략)</p> | <p><u>각호의 사람이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참석 시기와 장소를 통지한 후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u></p> <p><u>제14조</u> · <u>제15조</u>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p> |
|----------------------------------------|-----------------------------------------------------------------------------------------------------------------------------------|

[별표 2]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제9조제8항 관련)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 1) 청력의 장애는 순음청력계(pure tone audiometer)로 측정한 순음청력치[단위: 데시벨(dB)]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어음명료도(語音明瞭度) 검사 결과를 참고한다.
- 2) 장애의 등급: 청력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급판정표 1(순음청력치 기준)

| 한 귀의 청력 손실 \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                   | 90dB 이상 | 80dB 이상 | 70dB 이상 | 60dB 이상 | 50dB 이상 | 40dB 이상 | 정상      |
|----------------------------------------------|---------|---------|---------|---------|---------|---------|---------|
| 90dB 이상<br>(청력을 완전히 잃음)                      | 4급 제3호  | 5급      | 6급 제4호  | 7급 제3호  | 7급      |         | 9급 제9호  |
| 80dB 이상<br>(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 5급      | 6급 제3호  | 7급      | 7급      | 9급 제8호  |         | 10급 제7호 |
| 70dB 이상<br>(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 6급 제4호  | 7급      | 7급 제2호  |         |         |         | 11급 제6호 |
| 60dB 이상<br>(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 7급 제3호  | 7급      |         | 9급 제7호  |         |         | 14급 제3호 |
| 50dB 이상<br>(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움)  | 7급      | 9급 제8호  |         |         | 10급 제6호 |         | 14급 제3호 |
| 40dB 이상<br>(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         |         |         |         |         | 11급 제5호 | 14급 제3호 |

비고

1. 영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청력의 장애등급은 위 표에서 급수만 표시한 것임
2. 청력 역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한다.

나) 등급판정표 2(순음청력치와 어음명료도 기준)

|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br>한 귀의 청력 손실 |         | 30% 이하  |         | 50% 이하  | 70% 이하  |         | 정상      |
|-----------------------------|---------|---------|---------|---------|---------|---------|---------|
|                             |         | 80dB 이상 | 50dB 이상 | 50dB 이상 | 50dB 이상 | 40dB 이상 |         |
| 30% 이하                      | 80dB 이상 | 4급 제3호  |         |         |         |         |         |
|                             | 50dB 이상 |         | 6급 제3호  |         |         |         |         |
| 50% 이하                      | 50dB 이상 |         |         | 7급 제2호  |         |         | 11급 제6호 |
| 70% 이하                      | 50dB 이상 |         |         |         | 9급 제7호  |         |         |
|                             | 40dB 이상 |         |         |         |         | 10급 제6호 |         |

#### 4. 입의 장애

##### 가. 말하는 기능의 장애

- 1)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언어장애나 구음장애 및 아래턱·혀·입술·입천장·치아·인두(咽頭) 및 후두(喉頭)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음장애를 말하며, 음성장애는 인정하지 않는다.
- 2)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常態)로 언어기능이 모두 없어진 사람 또는 입술소리(구순음)·잇몸소리(치설음)·입천장소리(구개음)·목구멍소리(후두음) 중 세 가지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한다.
- 3)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 시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2)의 입술소리, 잇몸소리, 입천장소리, 목구멍소리 등 네 가지 중 두 가지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 4)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 시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또는 2)의 네 가지 중 한 가지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 5) 일상적인 대화 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가벼운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6호마목에 따른 "신체 일부의 신경장애"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

- 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위·아

래턱의 맞물림[교합(咬合)], 치아 배열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장애, 식도의 협착(狹窄), 혀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삼키거나 씹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은 유동식(流動食)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3)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4)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가 남은 사람"은 고형식(固形食)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 다. 치아의 장애

1) 영 별표 3에 따른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상실되거나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으로 한다.

2) 부분틀니[有床義齒] 또는 고정성틀니[架橋義齒]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支臺冠, 틀니를 지지하는 치아에 금속관을 씌운 것), 포스트-인레이(Post-Inlay, 심하게 손상된 치아에 기둥을 삽입하여 틀을 만든 후 인공물을 채우는 기술) 또는 인레이(Inlay, 충치 부분을 제거한 후에 인공물로 속을 채우는 기술)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아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상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 수와 의치의 치아 수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 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4) 치과보철을 한 후에도 치아 손상이 원인이 되어 말하는 기능의 장애 또는 씹는 기능의 장애가 남은 경우는 각 장애의 등급 중에서 상위의 등급을 해당 장애등급으로 인정한다.

#### 라. 기타

미각이 상실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다만, 미각의 일부 감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 가. 일반원칙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정도는 해당 장애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 나. 중추신경계(뇌)의 장애

1) 뇌의 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및 운동장애,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장애 등을 말하며 뇌성 언어장애는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따로 구분하여 뇌의 장애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신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3)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치매, 정신의 황폐,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애의 잦은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4)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2)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나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대뇌국소증상·인격변화 또는 기억장애 등이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 5)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 6)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한다.
- 7)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 나) 뇌전증(腦電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대상자의 주관적 의사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한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
- 8)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가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5호로 본다. 감각장애, 신체일부의 통증, 가벼운 마비, 뇌 위축, 뇌파 이상의 소견 등이 각종 검사 결과 확

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9)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 대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제10호로 본다.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신경학적 증상은 명백하지 않으나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고의로 과장된 호소가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 척수의 장애

- 1)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제3호를 적용한다.
- 2)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제3호를 적용한다.
- 3)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3호를 적용한다.
- 4) 마비 또는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제2호를 적용한다.
- 5) 마비 또는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제4호를 적용한다.
-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은 제9급제10호를 적용한다.
- 7)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5호로 본다.

라. 말초신경의 장애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원칙적으로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기관의 장애에 관한 등급을 적용한다.

마. 신체 일부의 신경장애

다른 부위의 신체장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체 일부의 그 밖의 신경장애("완전한 신경증상" 또는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정도는 노동력 상실 및 장애 내용, 장애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